

# 사이버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

한진만

강원 중재위원,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홍보하고 또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춘천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진만 위원(강원 중재위원,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이 『사이버상에서의 개인권익의 침해와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강원 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형일 중재위원(변호사)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다음은 주제 발표문과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편집자 주

## 1. 사이버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로 양분되어 각각의 매체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가 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커뮤니케이션의 낙원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퇴색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범죄 형태를 초래할 것이며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한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와 인격권(reputational right) 보호와의 갈등이다. 사이버 공간(Cyberspace)은 더 이상 가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다. 현실(reality)과 가상(virtual reality)의 이분법적 구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사이버 공간은 실제의 공간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은 더 이상 가상 속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 공간에서의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다(이

재진, 2000).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인 사이버상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 중에서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내용과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사이버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 (1)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 명예는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한다. 법인에게도 명예가 인정되는데,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킨다.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보아 혐오 또는 경멸을 받게 할 우려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김재형, 2004).

인터넷의 영향력 확장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주제논문

정보나 표현이 오프라인 언론기관을 통해 공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기관의 진실확인 의무와 언론기관의 편집권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전파행위를 넘어 새로운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언론기관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도 통상 오프라인 언론기관이 인터넷 언론기관보다 그 신뢰도가 높고 그 표현의 기억도 오래 유지되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더 커진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언론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1) 판례

가.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법 2006.11.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 항소)

【판결요지】

- [1] 인터넷에 게재된 게시물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인이 게시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 하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시물이 이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2] 국회의원의 발언 등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면책특권이 그 본질상 의회 내 토론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인정된 특권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국회 외에서 행하여진 발언 등의 경우는 면책특권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앞으로 행할 발언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국회 외의 장소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거나 그 발언 내용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자료와 동일하여 발언 직후 국회 출입기자들에 의하여 그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특권의 범위

에 포함될 수 있는 '직무부수행위'로 보기 어렵다.

- [3] 국회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떼값 명목의 돈을 받은 검사로 특정 검사의 실명과 직책 등을 기재한 글을 게재한 것이 위법한 명예훼손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2) 저작권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뉴스를 접하거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을 통해 각종 저작물의 내용을 검색·다운로드·업로드·전송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매개하는 자이기에, 온라인서비스이용자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텍스트, 데이터, 프로그램, 이미지 등의 콘텐츠 내용상 각종 표현행위에서 저작권과의 관계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다(이동훈, 200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페이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시한 경우 그 행위는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 되어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서버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내용으로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명예훼손의 경우와 같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행위에도 당연히 저작권법의 보호가 된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인터넷 특성상 온라인서비스이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보호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 1) 판례

가.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검찰이 음악저작권 침해를 혐의

로 기소. 2002년 7월 12일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용 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부는 '소리바다는 인터넷서비스 책임자로서 직접적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관여의 정도로 미루어 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힘.

### \* UCC로 인한 저작권의 문제

최근 인터넷사업자가 아닌 이용자가 직접 만드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UCC는 전문저작자가 아닌 일반인에 의하여 주로 작성되어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 의하여 이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텍스트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UCC도 하나의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UCC제작은 저작물의 창작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UCC제작자 자신이 순수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제작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되어 저작권법상의 아무런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UCC가 아무런 창작성을 가미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문제를 중심으로 UCC제작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이대회, 2007). 첫째로는 타인의 저작물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현재 저작권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에 창작성을 가미하여 2차 저작물로서 UCC를 제작하지만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보도·비평·교육·연구를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였지만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UCC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문제가 되

주제논문

는 경우이다. 넷째로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였지만 UCC와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나 중속적 관계가 부인되는 경우 저작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UCC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첫째로서 UCC와 관련된 주체간의 상호관계에서 파생하는 문제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는 일찍이 대법원 판결(1998. 9. 4. 선고 96다11327)에서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결국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자료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영석, 2003, 560쪽).

- 첫째, 시스템 운용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둘째,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정보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행위 포함)
- 셋째, 미디어 운용자가 가입자들에게 개인의 신상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 넷째, 환경감시를 명분으로 여러 정부기관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개인 신상정보를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경우

(4) 초상권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진 등을 허락 없이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2005년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1) 판례

가. 서울남부지방법원(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은, 피고 방송사가 원고를 직접 출연시킨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제작하여 보험사들에게 판매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영업에 이용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에는 동의하였지만, 초상의 공표를 승낙하였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하여, 피고들이 보험사들에게 직원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원고의 사연을 소재로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한 것은 원고가 처음에 동의를 한 때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서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언론중재 2005년 겨울호 138면).

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05. 9. 7. 선고 2004가합84950 판결)은, 학원업, 연예인 대리, 영상·음반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회사에서 투자자모집을 위한 광고전단지에 유명한 연극배우 겸 영화배우인 원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

용한 사안에 대하여,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은 유명 코미디언인 원고 모씨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동통신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콘텐츠로 제공하여, 그 캐릭터 옆에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만들어서 유행시킨 유행어인 “...를 두 번 죽이는 것이요”, “...라는 편견을 버려” 등의 문구를 함께 게재하여 놓고, 이동통신회사의 고객들이 돈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로 이 사건 캐릭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코미디언으로서 대중적 지명도가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반론권 제도가 도입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진전으로 1987. 11. 28 언론기본법이 폐지된 가운데서도 언론중재제도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존속되어 계승되었고, 언론중재제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과 더불어 언론에 의한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나아가 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여망을 바탕으로 언론중재법이 2005. 1. 27 제정, 공포되고 2005. 7. 28 부터 시행되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종래의 언론중재제도와 달라진 부분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

분은 다음과 같다.

#### (1) 언론 조정·중재 대상 언론으로 인터넷 신문 포함

언론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는 언론을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신문까지 하였다. 그러나 포털 뉴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 뉴스를 언론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포털 뉴스를 언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포털 뉴스는 뉴스를 스스로 생산한다기보다 단순히 매개만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 인터넷 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로써 포털 뉴스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통한 간편·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뉴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의 충실을 도모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결국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관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 1) 언론으로 보는 입장

첫째, 언론관계법은 아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언론의 개념에 따르면 포털 역시 인터넷 언론에 해당한다. 둘째, 뉴스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포털은 주요 소비처가 되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3대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수가 기존 언론사들이 운영하는 언론사닷컴의 이용자 수를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셋째, 뉴스의 생산·공급 측면에서도 포털은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하고 있다.

## 주제논문

## 2) 언론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

포털은 뉴스 유통사일 뿐이지 뉴스생산자(언론사)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특히 현행법상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 3) 법원의 입장

(2006. 9. 8. 선고 서울남부지법 2005가단18300 판결)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의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해당 포털에도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로 인하여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판결에 불과하지만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가장 보수적인 법원의 시각에서도, 이제 포털이 기사를 생산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단지 매개만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 (2)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 창설

민법 제764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 즉 언론사의 고의성과 과실과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설사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에도 언론사가 그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는 한 허위보도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새로운 정정보도청구권을 창설함으로써 비로소 피해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 (3) 조정·중재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까지 확대

언론중재법 제18조 제2항은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의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만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언론중재법으로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에 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4) 고유의미의 중재제도 도입

종래 정기간행물법 및 방송법 등에서는 ‘중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언론중재법은 종래의 ‘중재’를 ‘조정’이란 용어로 바꾸고 제24조 제1항에서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 등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중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에서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언론에 관한 분쟁을 조기에 중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 졌음은 물론 언론중재제도의 명칭이 실질과도 부합하게 되었다.

## (5)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종래 구 정기간행물법 제19조 제1항은 “중재위

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 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추후보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함으로써 반론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한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

택하였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 제26조 제1항에서 아무런 제한 규정 없이 “피해자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적 전치주의를 폐지하였다. □

## 토 론

사 회 박 형 일  
변 호 사

**시진국(춘천지방법원 판사) :** 오늘 토론회를 지켜 보면서 사법부가 고민해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는 것 같아 시종일관 마음이 무겁다. 특히 UCC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법률분쟁이 예상되는데 케이스가 누적되다보면 좀 더 합리적인 분쟁 해결방안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제공자를 언론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제자는 전여옥 의원 관련 판결을 인용하여 최근의 법원 판결경향을 소개했는데 이 사건 말고도 명예훼손적인 표현물에 대한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명백히 물은 서모 씨 사건도 법원의 최근 경향을 잘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UCC가 저작권을 침해했느냐의 문제는 가공하지 않은 음악과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소리바다나 벅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는 또 다른 경우다. 그 자체가 하나의 창작물인 UCC는 가공을 거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저작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환(춘천KBS 제작부장) :**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회 각계의 의견이나 제보가 이제

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나 제작진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며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게 요즘 현실이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당한 적이 있다. 이해당사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은 보도의 양이 균형을 잃었다는 것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왜 방송에 내보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여부를 떠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분량으로 내보낼 것으로 조정했고 우리도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해당사자들이 문제 삼는 보도내용이 전혀 하자가 없음에도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으로 조정해주는 것을 보면서 추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사실관계를 명백히 따져주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회는 향후 조정과정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결론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명백히 해주는, 즉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게 양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공병진(강원일보 고충처리인)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만

토 론

들어진 제도가 언론중재제도라는 점에 공감한다. 또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를 언론중재법에 명시한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으며 손해배상 조정 규모나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김미영(강원일보 사회부 차장) :** 온라인 매체의 급속한 발달은 기존 오프라인 매체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낸다. 일례로 오프라인 매체가 익명처리하여 기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사가 온라인 매체에도 게재되면서 네티즌들에 의해 실명이 밝혀져 신분이 노출되고 특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명예훼손 소송으로 비화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데 이럴 경우 뉴스제공자와 포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김혁면(춘천MBC 보도제작부장) :**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 최근 우리는 수해 실종자 가족이 슬퍼하는 영상을 3초 정도 그리고 살인사건의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영상을 3초 정도 내보낸 적이 있다. 이러한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일부 부도덕한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비리를 고발하는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보도하려면 해봐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곤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될 경우 답변서를 만든다든가 혹은 출석해서 변론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기자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다른 뉴스 또는 다른 취재원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기사화했다가 잡음이 날 것이 두려워 기자들끼리 묵시적으로 취

재를 포기하고 뉴스 대상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

**이병남(강원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 언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진이나 방송 화면을 내보낼 경우 최대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자료로 일관하고 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용하는 것이 언론과 사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UCC를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에 기반하여 제작한 UCC의 경우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UCC를 규제하는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장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노현정 아나운서와 박지윤 아나운서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다. 당시 당사자들은 해당 포털사이트에 기사삭제를 요청했는데 노현정 아나운서의 경우는 삭제되었지만 박지윤 아나운서의 경우는 삭제되지 않아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삭제의 기준이 궁금하다. 또한 공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기사삭제를 요청할 경우 어떠한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이정원(춘천지방법원 판사) :** 인터넷상의 기사삭제와 관련하여 가처분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운영자가 삭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를 개인적으로 접해본 적은 없다. 별도의 기사삭제 절차가 없다고 해서 가처분절차를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지윤 아나운서 사건의 경우는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공표된 경우로 사생활침해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든다. □